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정수진 연구원

요약

만기 도래한 ISA 적립금은 연금계좌로 전환되도록 유도되고 있으나 전환자 수와 전환금액(공제대상 금액 및 공제세액)이 적어 노후자산으로의 연계성은 낮음. ISA 적립금의 연금계좌 전환이 부진한 이유는 전환금 한도가 적고,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성이 증가하며, ISA 계좌 유지율이 낮기 때문임. ISA 적립금의 세액공제 대상 수준 상향과 함께 종합소득 적용되는 연금소득 기준을 올리고, 연금연계 ISA(가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연금시장의 생성에 대해 보험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기가 도래한 ISA 적립금은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로 전환되도록 유도되고 있으나 전환자 수와 전환금액이 적어 노후자산으로의 연계성은 낮음
 - ISA 계좌의 만기는 2021년부터 도래되고 있으며, 해당 만기 적립금이 연금계좌로 전환될 경우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음¹⁾
 - 2021년에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6년 ISA에 가입한 239만 1천 명인데 이들의 가입금액은 3.4조 원 수준이며, 50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금액의 49.1%를 차지함
 - 2021년 실제 전환자 수(전환금액)는 1만 633명(269억 6,200만 원)으로 2016년 ISA 가입자(가입금액) 대비 전환율은 0.4%(0.8%)에 그치며, 50세 이상에서 전환율이 다소 증가하나 모든 연령 집단에서 1% 이하임

〈표 1〉 ISA 가입자 및 연금계좌 전환 대상자 현황

구분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전체	
2016년	가입자 수(천 명, A)	319 (13.3%)	654 (27.3%)	712 (29.8%)	706 (29.5%)	2,391 (100.0%)
	가입금액(조 원, B)	0.3 (9.0%)	0.5 (14.9%)	0.9 (27.0%)	1.7 (49.1%)	3.4 (100.0%)
2021년	전환자 수(명, a)	392 <0.1%>	1,339 <0.2%>	2,917 <0.4%>	5,985 <0.8%>	10,633 <0.4%>
	전환금액(백만 원, b)	610 {0.2%}	2,594 {0.5%}	6,482 {0.7%}	17,276 {1.0%}	26,962 {0.8%}

주: ()안은 전체 대비 비중, < >는 전환자 수 기준 전환율(a/A)을 의미하며, { }는 전환금액 기준 전환율(b/B)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2016년 기준); 국세청, “2022년 국세통계연보”(2021년 기준)

1) 소득세법 §59의3, 소득세법시행령 §40의2, §118의2 ③(<https://news.mtn.co.kr/news-detail/2019072510211793569>)

○ ISA 만기 적립금에서 연금계좌로의 전환이 부진한 이유는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전환금액 한도가 적고, 연금소득이 증가할수록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성이 증가하며, ISA 계좌의 유지율이 낮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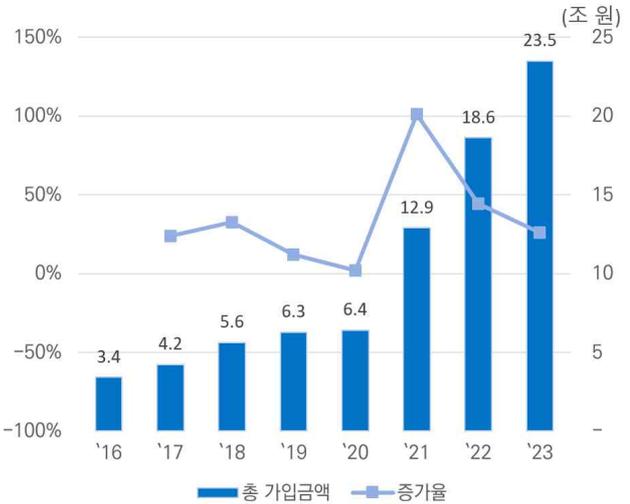
- ISA 계좌 만기 전환금액 전액은 기존의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 원에 추가하여 납입될 수 있으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환금액의 10%(한도 300만 원)²⁾에 그쳐 노후자산으로의 활용성은 낮음
- 한편, ISA의 연금계좌 전환은 향후 연금소득 증가로 나타나는데, 현재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³⁾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되어 연금계좌 전환을 꺼릴 수 있음
- <그림 1>, <그림 2>에서 보듯이 2016~2020년 동안 ISA 가입자는 감소하고⁴⁾ 총 가입금액은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동 기간 ISA 계좌의 보유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만기 시점인 2021~2025년 동안 전환자 수와 전환금액 또한 낮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ISA 가입자 수 및 증가율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그림 2> ISA 가입금액 및 증가율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정부는 2024년부터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의 확대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연금계좌 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⁵⁾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⁶⁾

2) 실제 세제혜택은 전환금액의 10%(한도 300만 원) 금액에 13.2%(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산출됨
 3) 2024년부터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적용함
 4) 2021년 이후 ISA의 가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제도 개정 효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던 것이 근로소득 유무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거주자로 하였고, ② 의무만기 기간이 청년형은 3년, 그 외는 5년이 적용되던 것이 모두 의무만기 3년으로 축소되었으며, ③ 납입한도가 이월이 불가하던 것이 이월이 허용되었으며, ④ 주식매매가 불가하였으나 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7.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5)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9%가 적용됨

- 한편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국내투자형 ISA⁷⁾를 신설하여 납입한도를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1천만 원⁸⁾(서민·농어민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ISA 계좌 만기 적립금이 노후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수준을 상향하고 연금연계 ISA(가칭)를 신설하는 등 연금계좌 전환을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ISA 적립금이 노후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금계좌 전환금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수준을 상향(예: 전환금액의 20%, 한도액 500만 원)하거나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혹은 3년)에 걸쳐 적용할 필요가 있음⁹⁾
 - 또한, 영국의 Lifetime ISA는 60세 이후 적립금 수령 시 비과세 및 연간 납입액의 2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데¹⁰⁾, 이를 고려하여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연계 ISA(가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ISA의 연금계좌 전환으로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연금계좌 전환을 꺼릴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으로 전환되는 연간 연금소득 기준인 1,500만 원을 물가 혹은 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ISA 계좌는 금융투자업 및 은행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 계좌의 만기 적립금은 연금계좌의 납입금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신연금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험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2021년, 2022년 최초 만기도래한 ISA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아 연금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2021년 이후 가입자 및 가입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026년(만기 3년일 경우 2024년) 이후 전환금액의 연금시장은 상당할 수 있음
 - 현재 연금저축이 IRP로 전환되고,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로 이동되어 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ISA 전환금액을 통해 신연금시장이 생성되는 과정에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음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1. 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7)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면 우리나라 ISA는 일반형과 국내투자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게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는 국내투자형에만 가입할 수 있음

8)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되지 않고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됨

9) 예를 들어 전환금액이 4천만 원인 경우 동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에 5년 동안 나누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연간 8백만 원이지만, 현행 연간 한도인 3백만 원을 적용하여 5년 총한도액 1,500만 원(= 3백만 원 × 5년)을 적용함

10) 서울시50플러스(2019), “중장년층 자산형성 지원 방안 연구”; 정원석·마지혜(2017),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